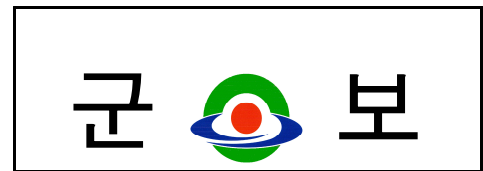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25호 2020. 3. 26.(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495호)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496호)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51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정당한 직무 집행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비용 지원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공무원이 먼저 부담한 변호비용을 사후 지원하는 현행의 선부담 후지원 방식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변호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취소사유 발생 시 환수하는 선지원 후환수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적극행정 기반 조성에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수당 금액을 규칙에 위임(안 제6조제1항)

나. 직무 관련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 현행 : 군 소속 공무원

○ 변경 : 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변호사 선임 비용 신청 절차 규정(안 제7조제2항·제3항)

○ 공무원등이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고,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

라. 지원된 변호비용의 취소 및 환수사유 규정(안 제8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민사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고소 또는 고발된 형사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유죄(선고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 소송 상대방 또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환수만)

마. 규칙 위임 근거 마련(안 제9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bj867s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4-650-68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직무 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무원직(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정당한 직무 집행 관련으로 고소·고발 당하거나 민사상 피소 당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형사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0만원 이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하 “변호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변호비용 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변호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공무원등에게 변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원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민사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된 형사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유죄(선고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② 군수는 공무원등이 소송 상대방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한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당) ① <u>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6조(수당) ① <u>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① <u>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건당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고소·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된 것 3.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된 것 4.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제7조(직무 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u>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무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정당한 직무 집행 관련으로 고소·고발 당하거나 민사상 피소 당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형사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0만원 이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하 “변호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u>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변호비용 지원 여부에 대하여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를 요청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u> <u>③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u> <u>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u> <u>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u> <u>3. 소송비용확정 결정서</u> <u>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u> <u>④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u>	<u>③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변호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공무원등에게 변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8조(지원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민사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된 형사 피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은 경우 4.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유죄(선고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② 군수는 공무원등이 소송 상 대방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회수할 수 있 는 경우 지원한 변호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비용보상금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위임된 고문변호사 수당, 직무 관련 변호비용 지원, 환수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220,000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변호비용 지원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변호비용 지원 신청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 서류 제출

다. 소송대리인 등 선임 및 증빙 제출 규정(안 제4조)

- 변호비용 지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임 후 증빙 즉시 제출
- 실제 지출한 보수가 지원받은 변호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 반납

라. 종결사항 보고 의무(안 제5조)

- 공무원등은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종결사항 보고

마. 변호비용의 환수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 환수 사유 발생 시 공무원등에게 반납 청구
-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

4. 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bj867s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4-650-68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매월 220,000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신청) 공무원등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경위서
4. 소장 사본 또는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사건 관련 서류
5. 형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을 이미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변호인 등 선임) ①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이미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비용이 지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변

호사 선임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등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지원받은 변호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종결사항 보고) 공무원등은 판결의 확정 등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군수에게 결과를 포함한 종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변호비용 환수)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변호비용을 환수하는 경우 및 제5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등에게 반납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등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변호비용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등에게 소송진행상황 및 소송결과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신청서						
성 명			직 위 (급)			
소 속			담 당 업 무			
사건번호	민사소송		피의사건(고소·고발)		형사소송	
	접수일	사건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지원금액	금 원		변호사 선임 여부			
사건개요						
구비서류	☐ 확약서 1부 ☐ 경위서 1부 ☐ 소장 사본 또는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요구서 등 사건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기 선임 시) ☐ 정당한 직무 집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서류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확 약 서

본인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변호 비용을 지원받고자 아래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피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음을 확인하며, 별지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3. 본인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8조에 따른 변호비용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비용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또는 준수사항 및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반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부 서 명 :

○ 부 서 장 : 직급) 성명)

○ 담 당 자 : 직급) 성명) 연락처)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예 천 군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내용 추가 및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추가 신설 및 내용변경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및 카드수수료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

- 그 밖의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지원대상자 범위 기준에서 거주 및 영업 유지기간 삭제를 통하여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현행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3년 이상 해당사업 계속 영위
- 개정 : 해당 규정 삭제

3. 개정안 : 불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전화 : 054-650-6853, 팩스 : 054-650-6099
- 전자우편 : peachksg@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은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군수는 소상공인의”로, “위한 사업은”을 “위하여”로, “호와 같다”를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및 카드수수료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 위와 유사한 것으로”를 “그 밖의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로 하며, “권장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을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이 란 ----- ----- ----- -----.
2. "지원"이라 함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을 말한다.	2. ----이 란 -----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사업비"라 함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업비"라 란 ----- ----- -----.
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이 란 ----- ----- -----.
제3조(지원내용) 군수는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내용) 군수는 소상공인의 ----- 의하여 -----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타 위와 유사한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예천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⑤ (생략)
⑥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

4.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및 카드수수료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

5. 그 밖의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
----- 인정하는---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
-----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팀장-----.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새 마 을 경 제 과	
연 락 처	650-6853